

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"를 "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통합방위법」 제2조"를 "「통합방위법」 제2조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별표1"을 "별표 1"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「구조장비 보유기준」 별표1"을 "「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14조"를 "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14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6조"를 "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6조"로 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별표2"를 "별표 2"로 한다.

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6조 중 "2022년 7월 1일"을 "2025년 7월 1일"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테러대응구조대”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구조구급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각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<u>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</u> 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·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국가중요시설”이란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, 공항·항만,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.	3. -----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편성) ①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	제5조(편성) ① ----- -----

음 각 호에 따라 별표1과 같이
편성·운영한다.

1.·2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제6조(임무) ① (생 략)

제9조(출동장비) ① 테러대응구조
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「구
조장비 보유기준」 별표1에 따
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
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1조(직무교육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
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「구조
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
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
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

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·
도 소방본부장은 「구조대원 교
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
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
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
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
여 선발하여야 한다.

제13조(대테러 대비훈련) ① (생
략)

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

----- 별표 1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무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9조(출동장비) ① -----
----- 「소
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」
별표 3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직무교육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
----- 「구조
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
제14조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「구조대원 교
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6조--

-----.

제13조(대테러 대비훈련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-----

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5조(지도점검) ① (생략)

제16조(재검토 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 별표 2 -----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지도점검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16조(재검토 기한) -----

----- 2025년 7월 1일 -----

-----.

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테러대응구조대”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구조구급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[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](#)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·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.
2. “테러취약시설”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「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, 다중이용시설, 공관지역,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.
3. “국가중요시설”이란 [「통합방위법」 제2조](#)에 따른 공공기관, 공항·항만,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.
4. “다중이용시설”이란 「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, 판매·회의, 문화·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4조(설치) ①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

구조·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·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.

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.

1. 소방청 :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, 필요시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2. 시·도 소방본부 :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·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·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,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편성) ①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**별표 1**과 같이 편성·운영한다.

1. 총기·폭발 등 일반테러 : 지휘 및 구조반, 지원반으로 편성
2. 화학·생물·방사능 테러 : 지휘 및 구조반, 탐지·제독반, 지원반으로 편성

②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,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, 세분화 할 수 있다.

③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,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·운영 할 수 있다.

제6조(임무) 테러대응구조대는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 (이하“테러방지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·구급
2.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

· 채취 · 이송 · 제독

3.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

4.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 · 점검 지원

5.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

제7조(출동구역) ①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앙119구조본부 :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

2. 시 · 도 소방본부 :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또는 특별자치도
관할구역

② 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시 · 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
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.

제8조(대응원칙) 테러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
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
한다.

제9조(출동장비) ①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「소방장비 분
류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
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 · 도 소방본부장
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
제10조(대원의 안전관리)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「11
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
준용한다.

제11조(직무교육)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 · 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
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
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방사능 누출,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
2.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,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
3. 화생방 구조·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
4.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대테러 구조·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

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·도 소방본부장은 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.

제12조(대테러 예방활동)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 요인의 사전·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대테러 대비훈련)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,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1.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
2. 장비숙달
3. 현장대응요령 숙지
4.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

③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·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 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, 인력·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대외협력체계)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 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도점검)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·도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재검토 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